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0. 9. 1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0년 8월 21일

나. 발 의 자: 정선희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0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8. 31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정선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프리랜서는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위 ‘근로자로서 권리’를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는 바, 사실상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등 법의 사각 지대에 놓이고 있기

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 명시(안 제4조)
-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- 프리랜서 활동 지원 및 특별 재정지원 사업(안 제8조~제9조)
-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조례(안)의 제안 이유는
  - 현대사회는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 형태가 파생되는 반면, 법적 보호는 여전히 「근로기준법」 등 현행법에 의한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음.
  - 프리랜서는 특정한 소속 없이 사용자의 관리·감독 및 지시에서 자유롭게 일한다는 특성으로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조례(안)의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으로 프리랜서를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.
  - 안 제6조에서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 - 안 제7조에서는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안 제8조에서는 법률 상담 지원, 노동관계법령 교육, 복지 및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등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,
- 안 제9조에서는 재난의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환수할 수 있음을 규정함.
- 본 조례안은 조직 구조의 유연화, 고용형태의 다변화의 영향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안정된 근로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.
- 프리랜서는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명시된 근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근로여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대금체불과 불법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. 그러나 프리랜서 역시 노동자라는 인식 하에서 현행 법 체계 속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바, 본 조례안을 통해 프리랜서에 대한 법률 상담, 노동관계법령의 교육,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지원 사업은 바람직함.
-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실직 등을 할 경우,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지원금 지원 대책도 중요함.
- 검토 결과
  - 현재 프리랜서는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본적인 권익 보장이 미흡한 상황인 바,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

(정선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0년 8월 일

발의자: 정선희 의원 외 명

## 1. 제안이유

프리랜서는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위 ‘근로자로서 권리’를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는 바, 사실상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등 법의 사각 지대에 놓이고 있기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 명시 (안 제4조)
- 다.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(안 제6조)
- 라. 프리랜서 활동 지원 및 특별 재정지원 사업 (안 제8조 ~ 제9조)
- 마.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
### **3. 제정안 : “별첨”**

### **4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근로기준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 : 2020. 8. 21. ~ 8. 26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프리랜서”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,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공공기관 등”이라 함은 영등포구청, 영등포구 산하 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, 영등포구의 사무위탁기관, 영등포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적용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
2.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「고용보험법」 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

**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**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)**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,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」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.

1.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
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
4.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·홍보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실태조사)**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, 보수, 계약조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지원 사업)**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
2.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
3.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

4.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9조(특별 재정지원)** ① 구청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·휴직·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·규모, 지원내용,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.

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예산확보)**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제9조의 특별 재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홍보)**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지원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